

2026

1

Monthly
Magazine

통 권 266호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즉답829-7575
Q&A답글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세청)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 건 조 세 정보

2026-1

세무회계경영
저널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안내

안건
조세
정보
인보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25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50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3년 매출액 711억원으로 250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변환 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금융자문·인수 합병 M&A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지속가능경영센터·양도중여상속팀·비영리공익팀 대표이사 박윤중·등기이사 장용석·조영우·정 훈·유환철 등 83명 등기이사 파트너 심리실·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홍재권이사, 염승섭회계사 보완심리		
	고경호·고두환·고영일·권창현·김경수·김대현·김동욱·김봉수·김영룡·김옥철·김윤정·김종창·김준영·김준일·김태준·김한솔·김현단·박규태·박병준·박 윤중·박정렬·박영동·배익권·백애라·서병욱·서혜빈(수습)·송형근·양승민·오진탁·유진우·유성식·윤훈기·이만선·이미지·이샤야·이진수·이재권·이종량 ·이희건·임정훈·장용석·제갈원구·조민기·조영우·조완진·진수미·최영진·표정협·한상표·허정식·홍상연·홍희빈·황창현		
서초(분실)	070-7668-6865	곽영미·박지은·선지우·이승환·이현섭·이혜리·정호신·박성민	
가산분실	02-6011-5517	설찬수·이남재·정 훈	
부산북(사상)	051-322-8321	공병진·윤재운·이동계	서초명달지점 070-5101-1651 김용환·김수범·강윤희
부산지점	051-819-3308	김수영·박지훈·이대건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장원택·신용목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김치현·홍영표·허정식	서초방배지점 6245-7502 정 훈·김태경·라선희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장시연·이진성	강남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안영호·최정화
대전지점	042-525-5558	김형진·이상훈·정대환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양용석·오유준·김한우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운	센트럴지점(용산) 2209-0710 유환철·유지운·윤현철
일산지점	031-817-4189	김중운·송주호·최민욱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이원재·방수혁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조승범·김성우·강세련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허 근·고경환
울산지점	052-263-7006	방수혁·오승혁·장효철	중기(마포) 02-312-2255 이익재·이준상·이승호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윤경만·박희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사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
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
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
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
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
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
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
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
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
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
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
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
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
액 검증
8. **사업계획서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
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외법정관리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
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 · 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
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
수로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
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달의 특집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안내

- 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과 올해 개정내용 비교	2
I.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	22
II.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28
III.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38
- 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51
I. 근로소득	51
II.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67
III.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78
IV. 특별소득공제(소법 §52)	85
V. 그 밖의 소득공제(조특법)	96
VI.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14
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1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114
3. 근로소득세액공제	122
4. 혼인세액공제	123
5. 자녀세액공제	123
5. 연금계좌세액공제	124
6. 특별세액공제	127

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2 (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자진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농특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20 (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6 (월)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확정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4분기 신고납부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12월)	144
----------------------	-----

이달의

특 집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안내

- 국세청 -

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와 발급처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 적 공 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장애 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상이자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주택 자 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회사 등 읍·면·동주민센터	국세청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주택 자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금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 료 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국세청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산후조리원비용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국세청
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보험회사 등	국세청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국세청
기부금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월세액	미분양주택확인서(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업)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월세액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국세청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외국인근로자 등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비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1. 연말정산 대상자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
	(다른 소득 없이 해당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입금액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연금액
3. 소득금액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 액 × 소득률)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4. 종합소득 공제금액 (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비용공제)
5. 과세표준 (①-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6. 세율	6~45%	6~45%	6~45%
7.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소법 §122)〉

항목	구분		비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원천 소득포함	국내 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 은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택마련저축	○ ×	
	우리스주조합출연금	○	우리스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 함

세액공제	근로소득	○	○	
	자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납세조합	○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 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대신 '급여총계 ×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 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 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 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 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 인 보장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 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 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 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 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
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
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개정취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종업원 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할인유형 > ❶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 ❷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❸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❹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 -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탐승권 등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비과세대상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비과세대상 요건) ❶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❷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 ❸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적용시기>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양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공제금액 확대 ☐ (좌 동) ☐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적용시기>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개정취지>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 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 (좌 동) ☐ (좌 동)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 → 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 근로자 공제율 축소 : 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근로자) 20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적용시기>

- (사업자 교부금 폐지·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종 전	개 정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추 가>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개정취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종교관련 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유 <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좌 동)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❶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❷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 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좌 동) ❸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내 용</th></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td>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❶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❷ 기초연금수급자 </td></tr> <tr> <td>대상 부동산</td><td>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 토지·건물)</td></tr> <tr> <td>납입한도</td><td>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td></tr> <tr> <td>납입기간</td><td>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td></tr> <tr> <td>사후관리</td><td>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 보험료로 보지 않음</td></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❶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❷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부동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 토지·건물)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 보험료로 보지 않음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❶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❷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부동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 토지·건물)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 보험료로 보지 않음												
	※ ❷·❸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개정취지>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 하는 기부금 등	☐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 아래의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법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추 가>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좌 동) -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 (좌 동)
---	---

<적용시기> 2025.2.2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장애인의 범위 ❶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❷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증명서 <추 가>	□ 장애인 범위 명확화 ○ (좌 동) ❹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 (좌 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에 한함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개정취지>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개 정
☐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무주택자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❶·❷·❸ 모두 충족 ❶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시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❷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추 가> 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추 가>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좌 동)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❸ (좌 동)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적용시기> 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도 적용

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개정취지>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

종 전	개 정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600~2,000만원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 (좌 동)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상환기간
고정금리 O	고정금리 X	10년 이상
2,000만원	1,800만원	600만원

- (거치기간) 없음
-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 매년 상환금액 :

$$\frac{\text{차입금의 70\%}}{\text{상환기간 연수}}$$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1년 이내
-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

$$\frac{\text{차입금의 100분의 70}}{\text{상환기간 연수}} \times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12}$$

11.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종 전	개 정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연 3.5%	☐ 이자율 하향 ☐ 연 3.5% →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적용시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 A × B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 A × B - C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 개인투자조합출자액 총액 (C)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

13.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 (원칙)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투자지분 이전·회수 등 발생 ☐ (예외) - 출자·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상 조합투자업자 <추 가>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 (좌 동) ☐ 예외사유 추가 ☐ (좌 동)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지분 이전·회수

<적용시기> 2025.2.28. 이후 해산 또는 투자지분 이전·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1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개정취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 (적용기한) 2024.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7.12.31.

15.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❶,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❶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 제공하는 자 *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❷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 자격등이 있는 자 < 추 가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❶, ❷, 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 동) 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적용시기> 2025.2.28. 이후 우수 해외인재 인증 받은 분부터 적용

1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개정취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❶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024.12.31. ❷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024.12.31.	☐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15% → 10% - 202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7.12.31.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개정취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종 전	개 정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신 설> ☐ (감면율) - (청 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연장 ☐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고시에 위임) ☐ 5년 이상 → 3년 이상 - (예외) 폐업·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 (좌 동) ☐ 20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농어업등 23개 업종) ☐ 운수 및 창고업 <제 외>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대상 업종 정비 ☐ (좌 동) - 「관세사법」 따른 통관업 ☐ (좌 동)

<제 외>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 외> ○ 부동산업 <제 외>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좌 동) - 수의업 ○ (좌 동) - 부동산 임대업
---	--

<적용시기> 20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19.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종 전	개 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기부금 - 10만원) × 15% ○ (기부·공제한도) 500만원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 (좌 동) - (10만원 초과) (기부금 - 10만원) × 15%(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 500만원 → 2,000만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공제적용 소득) ① 또는 ② 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좌 동) ○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① (좌 동) ②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2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취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확대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 19세 이상 34세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대상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적용시기>

- (소득공제)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비 과 세) 20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11항, 제13항)

<개정취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 추징요건 등 합리화

종 전	개 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 또는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금액 추징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해지 6개월 이내) <추 가>	☐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좌 동)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계좌 해지 시 추징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해지 6개월 이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하기 위해 해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전환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기간 5년 초과 후 폐지 <추 가>	☐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좌 동)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중도해지 사유 ☐ 주택 당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 <추 가>	☐ 중도해지 사유 추가 ○ (좌 동)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저축자의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해지 6개월 이내)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필요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적용시기> 2024.11.12.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

<개정취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간) 2024.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연장 ☐ 2025.12.31.까지 가입분

24.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 ☐ (가산세)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이자상당액) 50만원 × ❶ × ❷ ❶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❷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1일 0.022%)
<신 설>	☐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절차) ❶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❷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5.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공제율</th></tr> <tr> <td>① 신용카드</td><td>15%</td></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 </table>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추가공제) - (공제율) <table border="1"> <tr> <th>항 목</th><th>공제율</th></tr> <tr> <td>①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r> <td>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td><td>30%</td></tr> </table> <추 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항 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 <table border="1"> <tr> <th>항 목</th><th>공제율</th></tr> <tr> <td>①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r> <td>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td><td>30%</td></tr> </table>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좌 동) ○ (좌 동)	항 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항 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항 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적용시기> 2025.7.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

26.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신 설>	☐ 체육시설이용료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시설 및 대상금액 계산 기준 신설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공제대상)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계산기준)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

<적용시기> 20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I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 분	항 목	일 정	세 부 내 용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25. 12. 1~ '26. 1. 15.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6. 1. 17.(1.20.) ~ 3. 10.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25. 1. 20. ~ 2. 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6. 2. 1. ~ 2. 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5. 12. 31.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26. 1. 10.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6. 1. 20. ~ 2. 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6. 3. 10.	• '26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1.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가. 연말정산 업무준비 ('25.12월~'26.1월 중순)

○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정세법 해설 등 확인('25.12월)

※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은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되나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유형 선택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25.12월)

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인식(영수증금액 추출)프로그램과 회사의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방법이 달라짐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26.1월)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26.1월 초)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26.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

※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선택한 경우)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함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 연말정산 처리 일정(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안내, 환급일정 포함)
- 세법 개정 내용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26.1월 말까지)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 등·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기부금 내역 등 정리

-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정리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



참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재취업자 또는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

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제출 ('26.2월 중순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함(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 : 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 : 1.18.)
- 자료제출기관은 1.18.까지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수정·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난임시술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

다. 소득·세액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6.2월말)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참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조직에 맞도록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26.3.10.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6.2월 지급분과 '25년 연말정산을 포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0일까지 제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작성·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 점검 실시 및 오류 보완



주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①총급여액과 ②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 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의 5쪽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음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반기 지급분 + 연말정산분)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단, 환급신청 시 3월 10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은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조정한급 또는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한급시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함. 다만,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많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마. 분납

-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령 §185)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소법 §164)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소득세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

2) 제출기한 (소법 §164)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로서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되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출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 (근로, 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종류(근로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방식]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체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한다.
- 전산매체(CD 등)를 이용한 제출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입력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본점 및 지점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전산매체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에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간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서면 작성 제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편철단위마다(각 권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여 제출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 수)가 10명 이하인 자

4)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소법 §81의11, 법법 §75의7, 국기법 §49 ①)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원) 한도. 다
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
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다만,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소법 §81의 11)	법인(법법 §75의7)
사유			
	미제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제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1	
	지연제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0.5	

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포함)와 함께 원
천징수 관할세무서에 2026년 3월 10일까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대상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을 전산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산파일 제출방법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CD 등에 저장하여 원
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 전산파일을 CD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의료비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조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시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
고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 생성

II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이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25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소법 §135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 연말정산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소령 §20
	③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 다만,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인정상여에 포함하지 아니함(법기통 52-88...3) -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법령 §88 소령 §98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소령 §38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 소득에 해당	소령 §12 소기통 12-12...1
	⑥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소령 §16
	⑦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20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소기통 12-0...3
	⑧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함(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소령 §11 소령 §38①2
	⑨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령 §12
이중 근무자	○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소법 §137의2
전출·합병·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소기통 137-0...2,3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조특법§18 조특법§18의2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취득분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분 5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구분	중점 확인사항
기부금 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 2024.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취득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 5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5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25.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

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4.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5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1. 과 2.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22/100,000 * \times \text{경과일수}) \leq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19.2.12. 부터 2022.2.14.까지 기간은 25/100,000 적용

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이행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1)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text{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text{초과신고한 환급세액}) \times 10\%$$

2)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text{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text{초과신고한 환급세액}) \times 40\% (\text{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 60\%)$$

※ 적용사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다.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4 ①)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textcircled{1} \text{ 과소납부세액} \times \text{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times \frac{22}{100,000}$$

$$\textcircled{2} \text{ 초과환급세액} \times \text{경과일수(환급받은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times \frac{22}{100,000}$$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100분의 3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 '19.2.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 받은 경우로서 '19.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3/10,000, '19.2.12.부터 '22.2.14까지 기간은 25/100,000 적용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의4 ④)

III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1. 연말정산 방법 안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아래의 유형과 자체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설계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준비사항 등 정보를 안내

(유형 ①) 간소화 자료를 출력(종이)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유형 ②)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유형 ③)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유형 ④)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로 온라인 제출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유형 ⑤) 유형 ④ + 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유형 ⑥) 유형 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세액계산, 지급명세서 작성) 수행	
※ (유형 ④·⑤·⑥)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가. 간소화자료를 출력물(종이)로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유형①)

연말정산 유형 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
□ 이용대상 : 간소화자료를 수동(출력물)으로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또는 세무대리인)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여, 직접 수집한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 (회사) 서류검토 ⇨ 세액계산 ⇨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비고	회사의 전산환경에 상관없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는 보편적인 이용 방법

나.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대기업, 공무원 등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 (유형②)

연말정산 유형 ②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 이용대상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 국가기관 등 * 국세청 자료 추출프로그램(API)을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 설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PDF로 제출받아 자료 추출, 회사 연말정산에 이용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PDF 파일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고, 직접 수집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회사) PDF파일의 자료 수록·검토 ⇨ 세액계산 ⇨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비고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국세청 자료 추출 프로그램(API)이 연계된 경우에 이용 가능(출력 및 보관 비용 절감)

다.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일괄제공"받고자 하는 회사 (유형③)

연말정산 유형 ③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온라인으로 일괄 수신
□ 이용대상 :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이 있는 회사로서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일괄로 제공받는 경우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회사에 직접 간소화자료를 제공 (근로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에 대한 확인·동의 (민감정보 삭제 + 부양가족 확인) (회사)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명단 등록 ⇨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검토 ⇨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비고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일괄제공 받음으로써 연말정산 자료정리,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처리시간 절감 ※ 근로자 신청 명단을 미리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간편제출"받고자 하는 회사 (유형④)

연말정산 유형 ④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
□ 이용대상 :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이 있는 회사로서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을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받는 경우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근로자)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온라인 제출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제출된 자료 다운로드, 검토 ⇨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비고	간소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음으로써 연말정산 자료정리,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근로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미리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받아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유형⑤)

연말정산 유형 ⑤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이용대상 :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편리한 연말 정산을 통해 제출받고자 하는 회사(자체 시스템에 수록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등) (근로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제출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제출된 자료 다운로드, 검토 ⇨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비고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음으로써 공제신고서 작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근로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미리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자료수집, 세액계산, 지급명세서 작성 (유형⑥)

연말정산 유형 ⑥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 이용대상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 받고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까지 하려는 회사 (근로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간편제출된 자료 검토(다운로드)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 및 수정, 제출	
비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어 연말정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근로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미리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직접 총급여액(비과세 제외)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용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나.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증명서류로 사용 가능)에 의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해 조회 가능(증명서류로 사용 불가)

※ 2020년~2025년 및 연도 중 제출된 2026년 귀속분(중도퇴사자 등) 조회가 가능하며,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제출 다음 날부터 조회 가능 ⇒ '26.8월 수시오픈 이후부터는 '20년 귀속 확인 불가

(이용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또는

②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다. 과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공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소득·세액공제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1) 신용카드 사용액 조기 제공 및 예상세액 자동계산('25.11월)

- 근로자가 연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제공
- 전년도 지급명세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채워주고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액, 총급여액, 항목별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예상세액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추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하며, 각 항목별 공제한도액, 절세Tip, 유의사항을 제공

※ 2018년부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율인 '실효세율' 데이터 함께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2) 맞벌이부부 절세 가이드('26.1월)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손쉽게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3) 근로자 맞춤형 안내('25.11월)

- 근로자를 대상으로 빠트리기 쉬운 소득 및 세액공제항목*을 개별 안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마.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그동안 많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하거나 공제 증명서류를 전산에 입력하여 불편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미리 채워주어(Pre-filled) 편리하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음

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1) 소득·세액공제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수정 가능)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2) 절세 주머니

총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항목에 대하여 공제 요건, 절세Tip, 유의할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역 조회

2022~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관련 총급여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본인 인증 절차 필요)

4)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총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한 임의의 값을 자유롭게 입력하고, 입력값에 따른 세액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5) 예상세액 계산하기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적용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본인 인증 절차 필요)

6) 연말정산 자가체크리스트

주요 소득·세액공제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 통해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 적정여부 검증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7)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2020~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8) 자료제공동의 신청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 인증 절차 필요)

※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함.

9)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내역 확인 가능

회사와 근로자 모두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 인증 절차 필요)

10)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을 통해 공제가능 여부 확인

11)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

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제공

* 공제요건을 근로자 책임 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급여 구간별로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나. 연말정산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위한 연말정산 분야의 종합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다.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운영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매년 6월, 12월)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라.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제공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22년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프로그램」을 제공

※ 2014.1.1. 이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됨

(이용방법) 홈택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간편제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제공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사례 및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원천세 신고 전반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taxlow.nts.go.kr)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원천세 신고안내

사. 연말정산 신고안내 동영상 제공 ('25.12월)

신규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해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신고절차, 세법 설명 등 동영상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제공 ('25.12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로 책자파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제공

연말정산관련 주요 공제항목별로 자주묻는 Q&A, 공제Tip, 동영상설명자료, 단계이동형 자가체크리스트 등을 통합 수록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25.12월)

(이용방법) ① pc이용자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자주묻는 국세상담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② 모바일이용자 → 국세청 손택스 앱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상담하기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아울러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관련 도움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도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 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모바일(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라. 2025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06.12.31.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홈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만 19세 미만 자녀('07.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Q.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PC 또는 모바일)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다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Q.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A.4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A.5	-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부모님)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ID/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하여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하여 작성되나요?
A.6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음(유형 ①, ②)

○ 접근경로 (홈택스 www.hometax.go.kr)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③ 「편리한 연말정산」메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관리」클릭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③ 「편리한 연말정산」메뉴에서 「(근로자용)공제신고서 작성하기」클릭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 ②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③ 「바로가기」클릭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 (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5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유형 ⑤,⑥)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입력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참고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미리채움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일괄작성)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
 - 근무처 선택하고 간편채움으로 작성된 부양가족 정보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하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아래의 단계별 작성하기로 진행
- (1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구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총급여
공제신고서만 작성	선택	선택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 계산	선택	필수
간편제출	필수(회사가 먼저 등록)	선택

- (2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3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4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2)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용	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 위 절차 중 한가지만 해도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 확인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계산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 가능
-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3단계) 최근 3개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3) 간편제출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회사에 자체 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신고서를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하는 절차
 - ① 공제신고서 작성여부가 'Y', 기초자료 등록여부가 'Y', 처리상태 '확인 완료',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또는 '지급명세서 작성 실패'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낼 수 있음
 - ② 「지급명세서 중복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작성관리화면에서 작성 중인 근로자의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가 존재하는지 표시
 - ③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전송할 근로자 자료를 체크
 - ④ 「지급명세서 생성」을 클릭하면 선택한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정보(회사 입력정보 포함)가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전송
 - ⑤ 전송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사업 등)지급명세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로 이동

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5) 맞춤형 도움말 제공

- 근로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유형*의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를 제공
 -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버튼방식), 키워드 연말정산(하이퍼링크),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질문대답형), Q&A 모음집(책자) 등

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I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소법 §20)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임원등이 얻는 이익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들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38①)

-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

- 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등)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20만원 한도 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등)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명의로 입차한 차량 포함)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제외)
- 그 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①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 ③)
 -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조특법 §29의6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소법 §2 ④)

2. 비과세 근로소득 등

가-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어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어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3)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의2에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4)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5)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6)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소칙 §15의4)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6)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득-67, 2003.12.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면1팀-1366, 2007.10.08.)

8) 경조금 (소칙 §10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등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조특법 §16의2)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

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법 §16의3)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7.12.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조특법 §16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특례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6의4)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벤처기업 임직원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 10% 초과보유자, 지배주주, 지분 10% 초과보유자 및 그 초과보유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것

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 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실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과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다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

- 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취재수당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

다. 국외근로소득(소법 §12 3호 거)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

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원양어업선박 등에 근로 제공 시 비과세 적용>

- ①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한다.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② 승무원은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비과세 적용>

-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근로자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 설계업무 수행자에 한하므로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법규과-1552, 2012.12.28.)
- ②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라.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소법 §12 3호 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월정액급여 계산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3) 총급여액 계산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4)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금액 한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의 경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마. 비과세 식사대 등 (소법 §12 3호 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현물 식사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2)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된다.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2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바. 출산·보육수당(소법 §12 3호 머목)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

- 과세하고,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현행 유지)
-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최대 2회 분할 지급)에 지급받는 급여
- 20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0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을 포함
 - ① '25.1.1.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 ② '24.1.1.~'24.12.31. 지급한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일이 '21.1.1. 이후인 경우 비과세 적용
-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사. 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소법 §12 3호 처목)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 그 밖의 비과세 소득(소법 §12 3호)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 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말함

- 장애급여·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애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籍)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포함)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 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하는 것임(소령 §10의2)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공무상 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 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 포함)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

○ 비과세 학자금 지급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06.24.)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은 납입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고,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연금)되므로 2013년부터 비과세 소득에서 삭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가. 일용근로소득 (소령 §20)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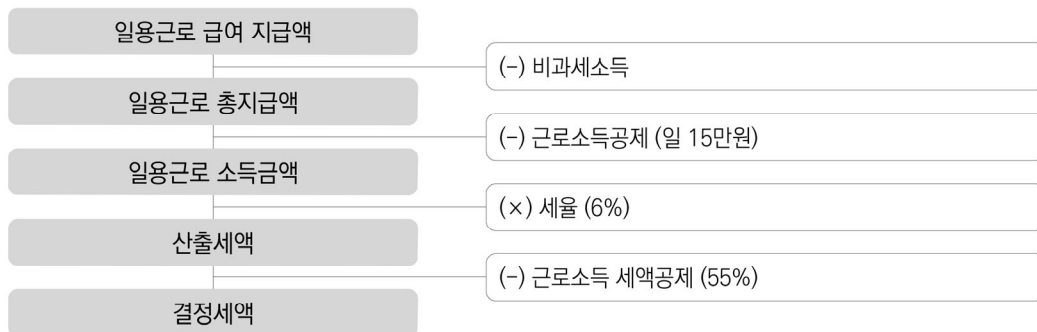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③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소령 §213④)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령 §49)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구 분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성과급 상여	-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소령 §51 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거래당시의 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 (소칙 §16 ①)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 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 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한다.
- 이 경우 급여를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 받은 때에는 정기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II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가. 원천징수의무자 (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 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 포함

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소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구 분	원천징수시기(특례)
매월분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연말정산(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 재취직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다. 원천징수 세율(매월/반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신청한 비율을 적용한다.(변경한 날부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변경한 비율을 적용)

반기별 납부자도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시 6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한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소령 §196)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매월/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종교단체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일정
 - 정기분 신고납부기한 :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 : 제출월(기한 후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월 25일부터 신고가능
 - 이용시간 : 신고기간 중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 (2)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 인정
 -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는 월말까지 최종으로 전송한 1건을 인정
 -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 삭제요청
 - 휴·폐업한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귀속, 지급연월은 신고서를 구분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요청한 후 정확한 귀속, 지급연월로 작성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시간 : 365일 07:00 ~ 22:00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 *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 서울시(이택스 : <http://etax.seoul.go.kr>), 서울시 외(위택스 : <http://www.wetax.go.kr>)

〈홈택스 세금납부방법〉

구 분		내 용
조회납부	신고분납부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신고분 납부
	고지분납부	고지한 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자진납부		신고하거나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하여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

다.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라. 징수 및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 「소득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세액공제 등

마.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가.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소법 §137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지 신고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참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소법 §138)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였다가 그 연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를 제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홈택스를 통해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시제출 가능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해당연도 8월부터 근로자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음.

* 이직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하여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12월말까지 조기제출 필요

다. 납세조합에 의한 연말정산 (소법 §150)

-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직한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라. 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분할 등의 연말정산

-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법인46013-2484, 1998.09.03.)
- 법인이 합병함으로써 인하여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게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을 한다.(원천세과-970, 2009.11.26.)
-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다.(법규소득2014-273, 2014.8.19.)

마.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한다.

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칙 §92)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연말정산 시기

가.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법 §134)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나.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한다.

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④)

5.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법 §1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령 §2)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이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거주기간의 계산 (소령 §4)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령 §2의2)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소령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6)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소법 §3)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나.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법 §119, 소령 §179)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연말정산 방법 (소법 §12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국일46017-92, 1997.02.06)

6. 외국인의 연말정산 (조특법 §18의2)

-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9%)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III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소법 §4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가. 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나. 적용방법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신청이나 증빙 불필요)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2. 인적공제

구 분	공제금액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가.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 (소법 §50)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법인46013-371(2001.2.16.),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함



참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02.10.)

2) 추가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계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 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참고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령 §107 ②)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을 받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인적공제 판정

1) 판정시기 (소득세법 §53)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이전 기간을 의미함(법제처 22-0472, 2022. 9. 14.)

2)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령 §106)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③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인적공제 한도 등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한다.

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5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본은 비과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 2025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2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원

-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80만원 = 200만원 - 120만원(필요경비)
-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2025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 사적연금소득은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3. 연금보험료공제 (소법 §51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51 ③에 따른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소득세법」 §51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소득세법」 §52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007.10.15.)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서이46013-10340, 2003.2.17.)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 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 2016.2.26.)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2019.02.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IV

특별소득공제 (소법 §52)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요약〉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노인장기 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30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400만원 [① + ②]	
	② 주택임차차입금원 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 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 (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 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 금의 이자상환액	연 600만원~2,000만원 [① + ② + ③]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	'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20년 이후 투자	투자금액의 10%(개인이 벤처기업·벤처 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 신탁의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 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 과한 사용액의 15%~40% ※ '25.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수영 장·체력 단련장 이용료를 추가공제 에 반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한도 -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공제대상 금액은 각 항 목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문화체 육 사용분을 제외하고 200만원 을 한도로 추가공제 * '25.7.1.이후 지출분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 액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출연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 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연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 저축 납입액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 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 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 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1. 특별소득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 공제[보험료·주택자금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2. 보험료공제 (소법 §52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소득세집행기준 59의4-118의4-1)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3. 주택자금공제 (소법 §52 ④, 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1,000분의 31('24.3.22.~'25.3.21.까지는 1,000분의 35, '23.3.20.~'24.3.21.까지는 1,000분의 29, '21.3.16.~'23.3.19.까지는 1,000분의 12, '20.3.13.~'21.3.15.까지는 1,000분의 18, '19.3.20.~'20.3.12.까지는 1,000분의 21, '18.3.21.~'19.3.19.까지는 1,000분의 18, '17.3.10.~'18.3.20.까지는 1,000분의 16, '16.3.16.~'17.3.9.까지는 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3) 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요 예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원천-527, 2011.08.25.)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소득 2014-112, 2014.06.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소 득-0835, 2019.04.26.)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적용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

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3)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각 호)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 ①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 ③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

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④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1)의 ①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⑤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5)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2023.12.31.이전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 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20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적용)

6) 공제한도

○ 202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 2023.12.31.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경우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24.1.1.이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경우 :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2,000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6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고정금리 방식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주택자금공제의 한도액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한도액 ㉠이 2012.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15년(고정금리or비거치식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기타) : 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 2,0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Min (㉠, ㉡) ㉠ : ㉡+㉢ ㉡ : 400만 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이 2012.1.1.이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미만 :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 29년 :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 2,000만원

7)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8)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주택 수 계산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
- 사업용·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요 예규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재소득-604, 2006.09.25.)
- 부부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453, 2009.05.27.)
- 취득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468, 2009.05.2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원천-488, 2009.06.04.)
-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원천-680, 2009.08.11.)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759, 2010.09.29.)

V

그 밖의 소득공제 (조특법)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구 조특법 §86 : 2013.1.1. 삭제)

가.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 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신협·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신협·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나.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조특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득46073-87, 2003.06.13.)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6천만원	6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다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의3 ⑤)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부과하던 해지가산세를 폐지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같음

다. 공제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p.99의 공제한도를 적용

라.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되며,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부과 제외

* 2013.3.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저축불입액의 2%)를 부과하지 않음

마. 주요 예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4.23.)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서면1팀-1097, 2005.9.16.)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740, 2007.12.26.)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210, 2010.3.11.)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투자 당시에는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 ※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가.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①과 ②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이고,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아래 ①-1에

다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

①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①-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①-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②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①-1 및 ①-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위 3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투자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투자신탁 재산 총액 중 3의 ①, ②에 투자하는 비율) 및 100분의 15(투자신탁 재산 총액 중 3의 ①-1에 투자하는 비율,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①-1의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봄)이상

※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함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계산

$$\text{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times \frac{\text{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text{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창업·벤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6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사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투자 당시에는 공제 가능한 벤처기업 등 「조특법」 제16조 제①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 적용
 - ※ '18년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times \frac{\text{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text{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공제율	한도금액
'22년 이후 투자분	10%(100%,70%,30%)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 ①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투자자명세표 1부,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등에 확인서 발급 신청

라. 소득공제 추정

- 소득공제 추정사유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 추정방법(조특령 §14 ⑧,⑨)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하고
 -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정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 “문화체육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 문화체육 사용분

- 2025.7.1.이후 지출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공제대상금액에 추가(공제율 : 3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만 적용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시설이용료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로 계산

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 :

$$\text{최저사용금액} \times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5\%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전 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5\% + (\text{현금영수증} + \text{직불·선불카드} + \text{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times 30\%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 \text{현금영수증} - \text{직불·선불카드} - \text{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times 40\%$$

-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아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문화체육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단, 중고차 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는 제외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에 기재된 금액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 포함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조특법 §126의2 ④, 조특령 §121의2 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국가·지방자치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법정·지정기부금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마.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의해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 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함께 제출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통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 등")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발급·통지한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제공

사. 소득공제 적용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아. 유의사항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

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조특법 §88의4)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위탁하는 때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위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위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해당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해당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할 수 있음.

$$(\text{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text{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times 50\%$$

* 위기지역 내 「조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함

가.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인당 시간당 임금 : 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 임금총액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근로시간 합계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② 고용 유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임금 감소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⑥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 연간 임금총액 계산

-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①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text{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times \frac{\text{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text{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frac{\text{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text{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text{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의1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5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 공제 요건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저축가입대상에서 제외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할 것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한다.

다. 공제배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라.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중도해지 시 추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한다.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20)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액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가. 공제 요건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것
 -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129①)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이내일 것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한다.

다. 공제배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라.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중도해지 시 추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한다.

10.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VI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소법 §59의5)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등)

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30, 조특령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200만원을 한도로 함)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

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②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④ 경력단절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조특령 §26의8 ⑫)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 진단, 퇴직일 당시 임신,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 육아, 퇴직일 당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교육,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 돌봄, 퇴직일 당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또는 장애인을 동거보양

- 해당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컴퓨터학원 추가

※ 제외 업종 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서비스업 중 출판물 교정·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 (서면-2015-소득-0636, 2015. 05.12.)

○ 감면 신청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 할 수 있다.

※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원천-428, 2012.8.17.)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조특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계속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면세액 계산 등

① 감면세액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②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text{세액공제액} = \text{「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times (1 - \text{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제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46조의3 제2항 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2)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50\% (\text{부품등은 최초 3년 70\%})$$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감면대상 경영성과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함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 영업이익(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함)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3) 감면세액 계산

$$\left(\frac{\text{종합소득}}{\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right) - \left. \begin{array}{l} \text{중소기업} \\ \text{취업자 소득세} \\ \text{감면세액}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경영성과급}}{\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50\%$$

4) 제출서류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를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를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29의6)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3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90%	50%
그 외(핵심인력)	50%	30%

1) 감면대상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2)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 중소기업 핵심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2)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3) 감면세액 계산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begin{matrix} \text{청년 90\%(50\%*)} \\ \text{그 외 핵심인력 50\%(30\%*)} \end{matrix}$$

*괄호 안의 숫자는 중견기업의 경우

4)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18의3)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 기획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이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3)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50\%$$

4)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법 §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가. 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 3천300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4. 혼인세액공제(조특법 §92)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5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달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 22/100,000

1) 공제 요건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 '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 (2024년 귀속부터 적용)

2)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절차
 -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5. 자녀세액공제 (소법 §59의2)

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8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명	⇨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

* 3명 : 95만원, 4명 : 135만원, 5명 : 175만원

나. 출산·입양 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6.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법 §59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 연금저축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2014년 이후)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 (55백만원) 이하	600만원	15%
45백만원 (55백만원) 초과	(900만원)	12%

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2022. 4. 14.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소득령 §118의3)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201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한다.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다.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소법 §59의3, 소령 §40의2, §118의2 ③)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함)
- 연금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연금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연금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부동산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로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 연금계좌취급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자를 통보 받은 경우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봄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6.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법 §59의4)

〈특별세액공제 요약〉

세액공제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료비	㉠ 본인·장애인·만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난임시술비 : 20%)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2,000만원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0%) *특별재난지역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	----------------	----------------	--

가. 특별세액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가능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4 ⑤)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액공제 불가함에 유의

- 표준세액공제(소법 §59의4 ⑨)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아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나. 보험료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 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181, 2010.03.03.)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3)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3)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출대상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구 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가.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 본인, 65세 이상 자, 6세 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 - (총급여액 × 3% - ㉣)
㉣ 그 외 부양가족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 ㉣
	연 700만원	다.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료비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②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20년 기준 : 소득 수준별료(7단계) 81만원~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라. 교육비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

2)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3)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 (소령 §118의6 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16.12.20.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1조, 제1항)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4)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서이46013-10624, 2001.11.28.)
-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현재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현재 9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현재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317, 2004.03.02.)
-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1팀-782, 2004.06.09.)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원천-148, 2009.01.14.)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 교육비임(원천-361, 2009.04.24.)
- 비과세대상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학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원천-211, 2010.03.10.)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초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원천-451, 2010.06.01.)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임(서면법규-933, 2013.08.29.)
-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심사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1267, 2013.11.19.)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282, 2014.03.26.)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과-1210, 2018. 05.03.)
-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 2020.11.23.)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2021.04.20.)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5472, 2023.06.2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환율 적용방법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5) 공제가능 교육기관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

④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중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입학연도 1월~2월 포함)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공제대상 교육비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④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⑤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 시 이를 차감
- ⑦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마. 기부금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④)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30%)를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하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기부금(조특법 제58조)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10만원 이하 : 100/110

	(연간 한도 500만원)	10만원 초과 : 15/100
③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⑤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일반기부금(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3) 기부금 유형

가)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76)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출서류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한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나)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58)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특별재난지역은 30%).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10\text{만원} \times 100/110) + (\text{고향사랑 기부금} - 100\text{만원}) \times 15/100$

○ 접수 및 상한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다) 특례기부금 (소법 §34 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4)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 법령 §38 ①)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 포함)이 기부금 확인서(소칙 별지 제36호의 2 서식)를 발행하여 확인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 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 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기재부 고시로 지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전체 배분 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배분 지출액이 없을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88의4 ⑬)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5)

마) 일반기부금 (소법 §34 ③)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나. 「교육기본법」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4) 기부금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소법 §61)

-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4.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②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이월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
이월 특례기부금(2014~2023)→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4)→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4)→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4~2023)→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24)

※ 2015.12.31. 이전 기부금을 지출한 거주자가 2016.1.1. 이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기재부 소득세제과-473, 2017.10.11.)

6)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소법 §160의3)

- 작성의무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소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1)] 작성내용 :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 ※ 2010년 1월 1일부터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기부자별 발급명세 의무 보관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기부자별 발급명세 제출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소법 §160의3 ③)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소칙 별지 제29호의7 서식(2)]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기부금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7)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소법 §81의7, 법법 §75의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6)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구 분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①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①”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생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1일(월)	12월 2일(화)	12월 3일(수)	12월 4일(목)	12월 5일(금)
미 달 러 (USD)	1465.90	1469.10	1469.60	1468.70	1471.50
위 안 화 (CNH)	207.13	207.83	207.60	207.98	208.30
일 본 엔 (JPY)	939.47	945.15	942.96	946.33	948.59
유 로 화 (EUR)	1701.18	1705.55	1708.56	1713.97	1713.19
영 국 파 운 드 (GBP)	1941.00	1940.90	1942.08	1960.79	1960.70
캐 나 다 달 러 (CAD)	1049.24	1049.58	1051.82	1052.79	1054.20
홍 콩 달 러 (HKD)	188.29	188.63	188.80	188.69	189.07

통 화 명	12월 8일(월)	12월 9일(화)	12월 10일(수)	12월 11일(목)	12월 12일(금)
미 달 러 (USD)	1472.10	1469.00	1470.40	1470.40	1469.50
위 안 화 (CNH)	208.17	207.96	208.04	208.40	208.08
일 본 엔 (JPY)	948.09	942.06	937.67	942.81	945.05
유 로 화 (EUR)	1713.82	1709.62	1709.78	1720.07	1725.41
영 국 파 운 드 (GBP)	1961.57	1957.15	1955.85	1968.13	1967.95
캐 나 다 달 러 (CAD)	1064.58	1060.42	1062.01	1065.93	1066.94
홍 콩 달 러 (HKD)	189.10	188.80	188.94	189.90	188.84

통 화 명	12월 15일(월)	12월 16일(화)	12월 17일(수)	12월 18일(목)	12월 19일(금)	12월 22일(월)
미 달 러 (USD)	1472.50	1474.10	1472.40	1478.60	1477.20	1477.80
위 안 화 (CNH)	208.85	209.08	209.35	210.24	210.03	210.11
일 본 엔 (JPY)	945.30	950.39	951.47	950.01	949.63	937.78
유 로 화 (EUR)	1728.72	1732.73	1730.00	1736.17	1732.16	1731.02
영 국 파 운 드 (GBP)	1968.51	1972.20	1976.77	1977.70	1976.86	1977.44
캐 나 다 달 러 (CAD)	1069.28	1070.75	1070.52	1072.54	1072.49	1071.22
홍 콩 달 러 (HKD)	189.17	189.42	189.27	190.05	189.84	189.91

통 화 명	12월 23일(화)	12월 24일(수)	12월 26일(금)	12월 29일(월)	12월 30일(화)	12월 31일(수)
미 달 러 (USD)	1478.90	1483.40	1460.60	1442.30	1433.90	1434.90
위 안 화 (CNH)	210.33	211.10	208.37	205.38	204.53	204.76
일 본 엔 (JPY)	942.15	950.01	937.27	921.77	919.08	917.63
유 로 화 (EUR)	1739.78	1749.74	1721.10	1698.45	1688.35	1685.72
영 국 파 운 드 (GBP)	1991.70	2004.59	1972.76	1946.60	1936.84	1932.31
캐 나 다 달 러 (CAD)	1075.80	1083.60	1068.12	1055.43	1047.52	1047.72
홍 콩 달 러 (HKD)	190.08	190.73	187.84	185.60	184.46	184.41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생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z.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